의 안 번 호

2252

울신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5. 2.(목) 안영호 의원 외 6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2.(목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5. 21.(화)

2. 제**안설명 요**지(안영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현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울산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서 상위 법령인 조례로 상향하고, 조 례 제정을 통해 구 금고의 지정에 대한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안정 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금고지정의 방법(안 제3조)
- 금고지정의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 ~ 안 제8조)
- 금고지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평가결과의 공개(안 제10조)
- 금고업무의 약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안 제12조)
- O 금고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- 12 (제263회-본회의제2차부록)
 - O 협력사업비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 - O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다. 근거법규

○ 「지방회계법」제38조,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제48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○ 본 조례안은 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울산광역시 중구 금 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서 상위 법령인 조례로 상향하고 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 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회계법

제38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 할 수 있다.

- 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- 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- 3. 「산림조합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- 4. 「새마을금고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
- 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-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,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 7. 26.〉
-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회계법 시행령

- 제48조(금고 업무의 약정)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
 - 2. 주민의 이용 편의
 - 3. 금융기관의 재무구조
 -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"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를 말한다. 〈개정 2018. 10. 30.〉
 - 1.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
 - 2.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
 - 3.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 - 4.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 〈개정 2017. 7. 26.〉

- 1.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
- 2.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
- 3.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- 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7. 7. 26.>